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03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임오경·임광현·김남희

박 정·문대림·위성곤

윤준병 • 신영대 • 임미애

강유정 • 한민수 • 서영교

장철민 · 박홍근 · 김용만

유후덕 • 문정복 • 이병진

한정애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함(안 제88조의5).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 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u>202</u>	<u>203</u>
<u>5년 12월 31일</u> 까지 받는 배당	<u>0년 12월 31일</u>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 <u>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u>

<u>12월 31일</u> 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2.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1	2월	319	<u>일</u>		 	
2.	 2032 	 <u></u> 년	1월	 1일	 	